

# 공사설명서

1. 공사명 : 우이천 쌍문414앞교(수유동 청호빌라 앞) 재설치공사
2. 위치 : 강북구 노해로35길 113(수유동)
3. 목적 : 우이천 쌍문414앞교(수유동 청호빌라 앞)의 치수안전성 확보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
4. 총공사비 : 2,300,000천원
  - 도급비 : 1,550,505천원
  - 관급비 : 342,377천원
  - 이전비 : 407,118천원
5. 공사개요
  - 주요공종

공종	규격	단위	수량	비고
기존 교량 철거	폭 8m	m	26	
교량 재설치	폭 11.7m	m	26	
공사용 가도	폭 5~8m	m	18	
PILE 천공	토사	m	164	
임시보도교	폭 4m, 강재거더	m	23.25	
아스콘 포장		m <sup>2</sup>	980	
기타		식	1	

## 6. 설계변경 조건

-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 바, 착공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현장의 현황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.

가. 물량 변경이 있을 때

나.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

다. 발주처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때

라. 물가 변동이 있을 때

·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, 제74조, 제75조에 의거

마.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·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 7. 공사기간 변경불가

-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.31일까지로 하고, 『지방재정법』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 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되었으니 기간변경(연장)이 불가하며, 모든 정산서류(준공검사 조서 등)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.

## 8. 예정공정표

공 종	수량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비고
토 공	1식	=====										
철 거 공	1식	=====										
구조물공	1식		=====									
포 장 공	1식									=====		
부 대 공	1식		=====									

# 공사계약특수조건

1. 본 특수조건은 『우이천 쌍문414앞교(수유동 청호빌라 앞) 재설치공사』에 적용한다.
2. 강북구재무관은 계약자에게 수시로 작업을 지시하고, 계약자는 작업지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, 작업완료 기한 내에 작업지시 물량에 대하여 작업을 완료한 후 재무관에게 작업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.
  - 매회 작업지시 때 예정공정표에 의거 작업기한을 정하고 작업을 하되, 작업기한 내 작업을 이행치 않을 때는 매회 작업 지시된 물량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.
  - 대금 청구 시는 매회 작업완료보고서(작업이행 물량)에 의거 계약자가 필요할 시 일괄 묶어서 기성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.
3. 설계도서상 각 공종별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,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실 작업 물량에 대하여 정산 시행한다.
4. 강북구재무관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5. 도로 등 굴착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가스, 전기, 상. 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 관련도면 등을 관계기관에서 확인하여 안전수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6. 지하매설물 등을 관리하는 관계부서에서 관계자를 사전에 입회시켜 지하매설물의 위치, 보존상태에 대한 이상 유·무를 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,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.
7.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.
8.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『2016년 치수분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(별도발주)』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.
9. 본 공사의 일부 공종에는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특허권자와 발주처가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낙찰예정자는 당해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특허 제10\*\*\*\*\*호(프리텐셔닝 강판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 강재거더와 이의 제작방법 및 교량 시공방법)

문의사항 : 강북구 안전치수과 담당 김 산 (901-5894)